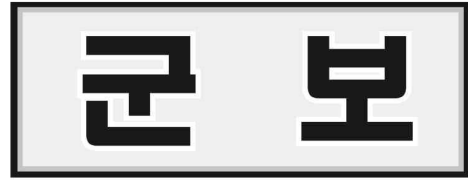




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627호 2026. 6. 30.

훈 령

- 순창군 훈령 제665호 순창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정 1

고 시

- 순창군 고시 제2026-121호 금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 4
- 순창군 고시 제2026-123호 금과면 송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 5
- 순창군 고시 제2026-124호 순창 군계획시설(공공문화체육시설, 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7
- 순창군 고시 제2026-127호 순창 군계획시설(근린공원, 대모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9
- 순창군 고시 제2026-128호 금과면 송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(3차) 승인 고시 12

공 고

- 순창군 공고 제2026-687호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
- 순창군 공고 제2026-706호 불용물품(공용차량) 매각 전자입찰 공고 20
- 순창군 공고 제2026-711호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4
- 순창군 공고 제2026-712호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 행 : 순창군 (편집 기획예산실)

순창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6년 6월 30일

순 창 군 수

순창군 훈령 제665호

순창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창군 자치법규 조문상에 반영되지 않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체계적 통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용 제명, 조문, 법률용어 등 정비) 순창군 각 부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규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,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효력기간) 이 규정은 시행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[별표]

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목록(제2조 관련)

연 번	관리부서	자치법규명	조항호목	현 행	개 정
1	기획예산실 (감사법무)	순창군 법제업무 처리 규정	제2조제3호, 제4조	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 제3조	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조
2	기획예산실 (감사법무)	순창군 일상감사 규정	제3조제2호	「문화재보호법」, 문화재수리공사등	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문화유산수리공사등
3	행정과 (행정)	순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	제29조제2항	근로자의 날	노동절
4	행정과 (행정)	순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	제27조제2항	근로자의 날	노동절
5	행정과 (총무)	순창군 청사방호 규정	제10조	「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 또는 「순창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」	「순창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」
6	행정과 (정보통신)	순창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	제6조	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	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
7	행정과 (정보통신)	순창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	제9조제1항	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	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8	행정과 (정보통신)	순창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	제9조제2항	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	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9	행정과 (정보통신)	순창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	제11조제2호, 제12조제3항	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	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10	주민복지과 (여성가족친화)	순창군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예방 규정	제19조제6항	여성가족부	성평등가족부

연 번	관리부서	자치법규명	조항호목	현 행	개 정
11	민원과 (건축)	순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지침	제1조	「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	「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12	건설과 (건설행정)	순창군 도로보수원 복무 규정	제10조	순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	「순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」

순창군 고시 제2026-121호

금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

금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.

2026. 6. 17.

순 창 군 수



1. 사 업 명 : 금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
2. 사업목적 : 면 소재지를 경제·사회·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
3. 총사업비 : 4,000백만원(균특 2,800, 도비 360, 군비 840)
4. 사업내용
 - 가. 기초생활기반 : 금과거점센터 조성, 복지시설 리모델링
 - 나. 지역역량강화 : 교육·문화 공동체 육성, 문화향유 프로그램, 귀농귀촌 공동체 활성화
5. 주요변경사항 : 다목적활동실 층고 변경(2.7m→3.9m)
6. 시 행 자 : 순창군수(대행기관: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)
7. 사업기간 : 2021년 ~ 2027년(7년간)
※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활력과,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기능 (농촌활력과 소도읍개발팀 ☎ 063-650-1758,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☎ 063-650-7064)
8. 시행계획도서 열람장소 : 순창군청 농촌활력과(전화 063-650-1758)
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(전화 063-650-7064)

순창군 고시 제2026-123호

금과면 송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

금과면 송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『농어촌정비법 제 59조 및 61조, 동법 시행령 제82조』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23일

순 창 군 수



1. 사 업 명 : 금과면 송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

2. 사업의 목적

- 송정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, 지역적 여건과 특색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마을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함

3. 사업위치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송정마을 일원

4. 사 업 비 : 500백만원(군비 500)

5. 사업기간 : 2024년 ~ 2026년 6월

6. 주요변경 내용

- 추진위원회 의견을 통해 물량 조정 및 공종 추가
- 관급자재 물가 인상 및 추가 구매 사항 반영

7. 사업의 효과

- 송정마을의 다양한 자원들의 기능의 효율적인 발전을 통해, 장기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8. 사업시행자 : 순창군수(위탁관리 :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)

9. 기타 문의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활력과(☎063-650-177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순창군 고시 제2026-124호

순창 군계획시설[공공·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]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

복합트레이닝센터 건축에 따른 순창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30일
순 창 군 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244-2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군계획시설(공공·문화체육시설 : 체육시설)
 - 명 칭 : 복합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
3. 사업시행 규모 (금회) : 1,096m²
 - 복합트레이닝센터 1동 건축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시행자 : 순창군수 (체육진흥사업소)
 - 주 소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- 실시계획인가일 ~ 2028. 12. 31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 조서 : “붙임”

7. 관련서류 : 관련도면 및 세부조서 “게재생략”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건설과(063-650-1827) 및 체육진흥사업소(063-650-552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“붙임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권리명세서(금회)

번호	토지소재지		지 목	지 적 면 적 (㎡)	편 입 면 적 (㎡)	소 유 자		소유권외의 권리자			비 고
	읍-리	지 번									
총 계			-	10,620	1,096	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	순창/교성	244-2	체	2,866	274	순창군	-	-	-	-	
2	순창/교성	245	체	208	54	순창군	-	-	-	-	
3	순창/교성	246	체	549	352	순창군	-	-	-	-	
4	순창/교성	248	체	102	49	순창군 순창군	-	-	-	-	
5	순창/교성	249	체	5,033	260	순창군	-	-	-	-	
6	순창/교성	666-1	체	1,862	107	국(농림부)	-	-	-	-	

순창군 고시 제2026-127호

순창 군계획시설(근린공원:대모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

순창 군계획시설(근린공원:대모공원)조성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사업인정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30일

순 창 군 수

1.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관한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54-5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1) 종 류 : 군계획시설(근린공원:대모공원)

2) 명 칭 : 순창 군계획시설(대모공원) 조성 사업

다. 사업의 면적

구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당초	변경	변경후		
결정	순창읍 백산리 18-1번지 일원	115,165			'77. 12. 30.	
금회시행	순창읍 백산리 18-1번지 일원	87,369	감3,305	84,064		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 성 명 : 순창군수(건설과)

2) 주 소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2020. 6. 30. ~ 2027. 12 31.

바.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 : 붙임조서 참조

사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: 해당사항 없음

아. 관련도면 및 세부조서 등 : 게재 생략

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(063-650-182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당초지번)	지목	면적(㎡)		토지소유자		소유권외의 권리		비 고
				지적	편입	성명	주 소	성명	주소	
계		21필지		87,369	87,369					
계		21필지		87,369	84,064					
1	순창군 백산리	18-1	전	694	694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	순창군 백산리	18-1	전	694	694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2	"	19	전	198	198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2	"	19	전	198	198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3	"	20	전	268	268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3	"	20	전	268	268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4	"	32	전	446	446	대*암	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**			
4	"	32	전	446	446	대*암	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**			
5	"	33-1	전	2,973	2,973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5	"	33-1	전	2,973	2,973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6	"	34-1	전	272	272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6	"	34-1	전	272	272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7	"	35-1	전	937	937	대*암	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**			
7	"	35-1	전	937	937	대*암	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**			
8	"	산48-2	임야	181	181	김*순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**길 **			
8	"	산48-2	임야	181	181	김*순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**길 **			
9	"	산50-2	임야	32	32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지분 3306 /3471
						이*호	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***			지분 165 /3471
9	"	산50-2	임야	32	32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지분 3306 /3471
						이*호	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***			지분 165 /3471
10	"	산51-1	임야	4,354	4,354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0	"	산51-1	임야	4,354	4,354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1	"	산52-6	임야	5,496	5,496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1	"	산52-6	임야	5,496	5,496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당초지번)	지목	면적(㎡)		토지소유자		소유권외의 권리		비 고
				지적	편입	성명	주 소	성명	주소	
12	"	산52-1	임야	6,864	6,864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2	"	산52-1	임야	6,864	6,864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3	"	산52-7	임야	3,327	3,327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3	"	산52-7	임야	3,327	3,327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4	"	산53-1	임야	330	330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4	"	산53-1	임야	330	330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5	"	산54-5	임야	10,946	10,946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5	"	산54-5	임야	10,946	10,946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6	"	산54-3	도로	1,094	1,094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6	"	산54-3	도로	1,094	1,094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7	"	산54-4	임야	14,799	14,799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7	"	산54-4	임야	14,799	13,951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8	"	산56-2	임야	6,356	6,356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8	"	산56-2	임야	6,356	6,356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9	"	산58-1	임야	4,347	4,347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19	"	산58-1	임야	4,347	4,347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20	"	산59-2	임야	18,342	18,342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20	"	산59-2	임야	18,342	15,938	순창군	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			
21	"	산59-3	임야	5,113	5,113	홍*기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**-*** *층			
21	"	산59-3	임야	5,113	5,060	홍*기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**-*** *층			

순창군 고시 제2026-128호

금과면 송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(3차) 승인 고시

금과면 송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『농어촌정비법 제 59조 및 61조, 동법 시행령 제82조』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26일

순 창 군 수



1. 사 업 명 : 금과면 송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

2. 사업의 목적

- 송정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, 지역적 여건과 특색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마을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함

3. 사업위치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송정마을 일원

4. 사 업 비 : 500백만원(군비 500)

5. 사업기간 : 2024년 ~ 2026년 6월

6. 주요변경 내용

- 공사감리비 조정으로 인한 시설부대경비 감액
- 순환아스콘 → 일반아스콘 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 수정

7. 사업의 효과

- 송정마을의 다양한 자원들의 기능의 효율적인 발전을 통해, 장기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8. 사업시행자 : 순창군수(위탁관리 :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)

9. 기타 문의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활력과(☎063-650-177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입 법 예 고 문

순창군 공고 제2026-687호

「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30일

순 창 군 수

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홍보 및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,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커뮤니티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
나. 운영시간 및 휴관일(안 제6조)

다. 사용 신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라. 사용의 제한 및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의견제출

가. 「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[참조: 농촌활력과장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하는 곳 : (우)56050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
순창군 농촌활력과(☎ 063-650-1755, Fax 063-650-1759) 또는
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<http://www.sunchang.go.kr>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촌활력과 전원마을TF팀장에게
(☎063-650-1755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[붙임]

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(이하 “커뮤니티센터”라 한다)는 순창군 금과면 아미산길 9에 둔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커뮤니티센터”란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, 방문객 및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관리자”란 군수의 명을 받아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수탁자”란 커뮤니티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.
4. “사용자”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·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.

제4조(기능) 커뮤니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전원마을 조성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
2. 입주 희망자 상담 및 안내
3. 지역 주민 및 방문객 등의 소통 공간 제공
4. 그 밖에 순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관리 및 운영) ① 커뮤니티센터는 군수가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효율적

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 선정 및 계약, 위탁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공무원 또는 관리자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시간 및 휴관일) ①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군수는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커뮤니티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토요일

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
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용 및 신청) ① 방문객 및 주민의 커뮤니티센터 이용 및 상담 등 일반 이용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2. 군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

3. 전원마을 홍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

4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용료) 커뮤니티센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
제9조(사용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시설을 훼손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사용승인의 취소 등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1.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
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4. 그 밖에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사 용 승 인 신 청 서

사용자	성 명		연락처	
	주 소			
	단체명			
사용목적 및 내용	사용시설			
	사용목적			
	사용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(일)		
	사용시간	: ~ :	까지	
	기 타			

「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제7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순창군수 귀하

순창군 공고 제2026 -706호

불용물품(공용차량) 매각 전자입찰 공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입찰사항

건 명	불용물품(공용차량) 매각		
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	2026. 6. 26.(금) 10:00 ~ 7. 3.(금) 16:00		
입찰서 제출처	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“온비드”(http://www.onbid.co.kr)		
개 찰 일 시	2026. 7. 6.(월) 10:00	개 찰 장 소	순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

나. 매각물품 현황(차량별 개별입찰)

차량번호	차종	차 명	연식	운행거리(km)	구입가격(원)	감정가액(원)	보관장소
86나8056	중형 화물	이-마이티	2014	142,153	40,825,000	6,000,000	순창군 제설야적장

※ 차량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**차량의 현 상태로 매각**하므로 입찰자는 **입찰 전에 차량 보관장소에서 차량의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**하고,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**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**

※ **불용품 매각은 세금계산서(부가가치세) 발행 대상 아님.**

2. 입찰방법

가.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로써,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이하 “온비드” <http://www.onbid.co.kr> 라 합니다.)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.

나. 입찰서 제출은 “온비드”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“온비드”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“온비드”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
다.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하며,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.

3. 입찰참가 자격

가. 입찰참가자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·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이하 “온비드”라

함)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“온비드”에 등록한 개인 또는 사업자

- 나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
다.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4. 입찰보증금 납부

-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41조에 의하여 입찰금의 **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**(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)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“온비드”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.
또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“온비드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나. 입찰보증금을 납부일시까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, 입찰 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다. **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**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거 **입찰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되며**,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**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.**
- 라. 개찰 후 낙찰자를 제외한 타 응찰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하며, 별도의 송금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.

5.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

- 가. “온비드”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 공고는 “온비드”게재(공매공고-연기공고, 취소공고)에 의합니다.
- 나. “온비드”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, 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
6.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**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,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**
- 나.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“온비드”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 다만, “온비드”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추첨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“온비드”의 입찰결과 화면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7. 입찰의 무효
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, “온비드”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.

8.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

가. 낙찰자는 **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** 매각대금은 계약과 동시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－ 계약장소 : 순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(1층)

－ 준 비 물

· 개 인 :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부, 신분증, 보험가입영수증

· 사업자 :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부, 사업자등록사본, 위임장 1부,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(인감 미지참시 사용인감계(인감날인) 제출로 대체 가능)

나. 차량인수는 낙찰대금 완납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을 필한 다음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.

다. 낙찰자가 기한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으로 귀속되며,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9. 청렴계약제 시행

가. 당 기관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나.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

10.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

가.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.

나.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, 입찰이후 차량상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차량 보관 장소에서 차량의 상태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※ 단, 차량상태는 평일 업무시간(월~금 09:00~18:00)에만 확인 가능합니다.

다. **매각차량이 노후 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** 매입한 차량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이유로 우리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
라. 매각차량은 차량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(신분증 지참)가 직접 인수하여야 하며, 인수 후 즉시 순창군을 의미하는 로고 등 공용차량임(공무수행, 정부 등)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마. **낙찰된 차량에 구조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사용 못하는 구조변경은 낙찰자 전액 부담하여 적법하게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완료한 후 반드시 운행해야하며,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사유로 적발시 순창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**

(※ 필히 구조변경 완료 후 서류제출. 경광등 및 싸인보드 제거 조건!)

바. 소유권 이전 비용 및 이전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사. 차량 인도 후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실,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아. 기타 입찰 관련사항은 **순창군청 재무과**(☎ 063-650-1397, 안은옥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자. 전자입찰이용안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 시스템 (<http://www.onbid.co.kr>)

차.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(“온비드 ” <http://www.onbid.co.kr>)

- 입찰서 제출 여부 : 온비드 / 나의 온비드 / 입찰내역 / 입찰상세정보
- 입찰결과 : 온비드 / 나의 온비드 / 입찰내역 / 입찰결과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06. 26.

전라북도 순창군 물품관리관

입 법 예 고 문

순창군 공고 제2026-711호

「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30일

순 창 군 수

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주민의 예산편성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며,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운영조례 용어 및 규정의 정비 (안 제1조 등)
- 나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조정 3년⇒2년 (안 제11조)
- 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세분화 (안 제13조)
- 라. 회의록 공개 명시 등 정보공개 수준 강화(안 제18조)
- 마.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주민자치기구와의 연계성 강화 (안 제4장)

3. 의견 제출

가.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[참조 : 기획예산실장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·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하는 곳 : (우)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기획예산실

(☎ 063-650-1127, Fax 653-114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

www.sunchang.go.kr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담당자 김명애 주무관 (☎063-650-1127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예산편성 과정” 을 “예산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“예산과정” 이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를” 를 “사람을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순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

제3조 중 “따라 예산편성 시” 를 “따른 예산과정에서의” 로, “예산편성 관련” 을 “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” 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예산편성 시부터” 를 “예산과정에서” 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예산 편성” 을 “예산과정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예산을 편성하기 전에” 를 “매년 예산편성 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연도의 한도액,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에는 본예산 편성에 한하며 국·도비 보조사업 예산,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” 를 “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. 다만,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 을 “예산과정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터넷” 을 “온라인” 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자는” 을 “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” 으로 하고 “제6조에 따라” 를 “제6조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 을 “예산과정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로” 를 “사람으로” 하며, 같은 항 제1호, 제2호 및 제3호 중 “자” 를 각각 “사람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·장애인·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,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” 를 “위촉한다”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3년” 을 “2년” 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
2.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의 개최
3.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4.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·조정
5.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6.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15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 을 “예산과정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

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“각 분과위원회”로 한다.

- ② 분과의 설치는 매년 군정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한다.
-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

제17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“판단된 때”를 “판단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위원회의 운영취지, 원칙, 목적,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7조로 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회의록 공개) 위원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, 심의안건,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20조를 제29조로 하고,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교육 및 홍보)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·교육·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지원 등”을 “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설치 및 구성)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

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·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(이하 “지역회의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 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지역회의 위원은 읍·면별 공개모집,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, 읍·면장이 위촉한다.

④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2조(기능)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
2. 지역 현안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·의견 제출
3.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
4.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
5. 기타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23조(운영) ①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 읍·면 행정복지 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.

③ 지역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4조(지역회의의 대행) 군수는 지역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·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에 지역회의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21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및 제2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5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지역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6조(지역회의 예산안 검토) 군수는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지원 등

제5장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(포상)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,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「순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순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<u>예산편성 과정</u>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<u>자</u>를 말한다. 1.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<u>자</u> 2. 순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<u>자</u> <u><신 설></u> 3. 순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<u>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</u>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이 조례에 <u>따라 예산 편성 시</u> 주민참여 보장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<u>예산편성 관련</u>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4조(군수의 책무) 순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<u>예산편성 시부터</u>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제5조(주민의 권리)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<u>예산 편성</u>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① 군수는 <u>예산을 편성하기 전에</u>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	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<u>예산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 제2조(용어의 정의)----- ----- <u>사람을</u> -----. 1.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<u>사람</u> 2. 순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<u>사람</u> 3. 순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<u>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</u> 제3조(법령준수의무) -----<u>따른 예산과정 에서의</u>----- ----- -----<u>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</u>한----- -----. 제4조(군수의 책무) ----- -----<u>예산과정에서</u> ----- ----- -----. 제5조(주민의 권리) ----- -----<u>예산과정</u>----- -----. 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① ----- ----- <u>매년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연도의 한도액,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</u>하는 -----.

현행	개정안
여야 한다.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는 <u>본예산 편성에 한하며 국·도비 보조사업 예산,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.</u>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군수는 <u>예산편성</u>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<u>인터넷</u>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제8조(의견 제출) <u>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</u> -----. 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군수는 <u>예산편성</u>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·③ (생략)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로 구성한다. 1.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·면장이 추천을 한 <u>자</u> 2.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<u>자</u> 3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<u>자</u> <u><신설></u>	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<u>군수가 해당연도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. 다만,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.</u>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---<u>예산과정</u>-----.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<u>온라인</u>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제8조(의견 제출) <u>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</u> -----. 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<u>예산과정</u>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사람으로</u> -----. 1. ----- ----- <u>사람</u> 2. ----- ----- <u>사람</u> 3. ----- <u>사람</u>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<u>청년·장애인·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,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정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<u>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u> ②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<u>3년</u> 으로 하고 -----.	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① ----- ----- <u>위촉한다.</u> ②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하고 -----.
제1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<u>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</u> 2. <u>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의 개최</u> 3. <u>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</u> 4. <u>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</u>	제13조(기능)----- ----- 1. <u>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</u> 2. <u>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의 개최</u> 3. <u>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</u> 4. <u>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·조정</u> 5. <u>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</u> 6. <u>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</u> 7. <u>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</u>
제1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<u>예산편성</u> 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<u>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, 군의 업무 분야별로 행정분과, 농림분과, 지역개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한다.</u> ③ <u>각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.</u>	제15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<u>예산과정</u> ----- ----- ----- ② <u>분과의 설치는 매년 군정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한다.</u> ③ <u>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

현행	개정안
④ <u>분과위원회</u>는 분과위원장 1명, 분과간사 1명을 둔다. ⑤ ~ ⑧ (생략) <u>제17조</u> 1 ~ 3 (생략) <u><신설></u> 5.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<u>판단되는 때</u> <u><신설></u> <u>제18조</u> (생략) <u><신설></u> 제4장 <u>지원 등</u> <u><신설></u>	④ <u>각 분과위원회</u>----- -----. ⑤ ~ ⑧ (현행과 같음) 1 ~ 3 (현행과 같음) <u>4. 위원회의 운영취지, 원칙, 목적,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</u> 5.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<u>판단되는 경우</u> <u>제18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</u> 위원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, 심의안건,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. <u>제19조</u> (현행 제18조와 같음) <u>제20조(교육 및 홍보)</u>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·교육·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 제4장 <u>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</u> <u>제21조(설치 및 구성)</u>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·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(이하 “지역회의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읍·면별 공개모집, 추천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, 읍·면장이 위촉한다. ④ 지역회의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제22조(기능)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2. 지역 현안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·의견 제출 3.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4.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5. 기타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<신 설>	제23조(운영) ①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②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. ③ 지역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신 설>	제24조(지역회의의 대행) 군수는 지역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·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에 지역회의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21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및 제2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<신 설>	제25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제19조</u>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제20조</u> (생 략)	<u>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한다.</u> <u>② 지역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<u>제26조(지역회의 예산안 검토) 군수는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제5장 지원 등</u> <u>제27조</u> (현행 제19조와 같음) <u>제28조(포상)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,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「순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제29조</u> (현행 제20조와 같음)

입 법 예 고 문

순창군 공고 제2026-712호

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30일

순 창 군 수

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반영
- 나. 민선9기에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조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총 정원 : 644명 ⇒ 658명(14명 증)
 - － 집행기관의 정원 : 626명 ⇒ 640명(14명 증)
 - －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8명(변동없음)
- 나.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배정(안 별표3)
 - 일반직 : 596명 ⇒ 610명(14명 증)
 - － 5급 : 32명 ⇒ 33명(1명 증)
 - － 6급 이하 : 555명 ⇒ 568명(13명 증)

3. 의견제출

가.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(참조 : 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하는 곳 : (우)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, 순창군청 행정과

(☎ 063-650-1224, Fax 063-650-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

홈페이지 <http://www.sunchang.go.kr>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(☎063-650-1224)에게 문의바랍니다.

붙임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644명” 을 “658명” 으로 하고, 제1호 중 “626명” 을 “640명” 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 급 별 \ 기 관 별	총 계	본 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
총 계	6 5 8	-				
정무직 계	1	-				
군수	1	1				
일반직 계	6 1 0	-				
3급	1	1				
4급	3	2		1		
4~5급	1	1				
5급	3 3	1 5	3	3	1	11
6급 이하 소계	5 6 8	-				
전문경력관 소계	4	-				
별정직 계	1	-				
5급 상당	-					
6급 상당 이하 소계	1	-				
연구직 계	1 3	-				
연구관	1				1	
연구사	1 2	-				
지도직 계	33	-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30	-	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	개 정						
제2조(정원의 총수) 순창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44명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						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658명 -----.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 : 626명							1. ----- : 640명						
2. (생략)							2. (현행과 같음)						
[별표 3]							[별표 3]						
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	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	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
총 계	644	-					총 계	658	-				
정무직 계	1	-					정무직 계	1	-				
군수	1	1					군수	1	1				
일반직 계	596	-					일반직 계	610	-				
3급	1	1					3급	1	1				
4급	3	2		1			4급	3	2		1		
4~5급	1	1					4~5급	1	1				
5급	32	14	3	3	1	11	5급	33	15	3	3	1	11
6급 이하 소계	555	-					6급 이하 소계	568	-				
전문경력관 소계	4	-					전문경력관 소계	4	-				
별정직 계	1	-					별정직 계	1	-				
5급 상당	-	-					5급 상당	-	-				
6급 상당 이하 소계	1	-					6급 상당 이하 소계	1	-				
연구직 계	13	-					연구직 계	13	-				
연구관	1				1		연구관	1				1	
연구사	12	-					연구사	12	-				
지도직 계	33	-					지도직 계	33	-				
지도관	3			3			지도관	3			3		
지도사	30	-					지도사	30	-				

[별지 서식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반 여 부		의 견	비고
	찬성	반대		